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8. 19. 박기석의원외 6인
- 나. 회 부 일 자 : 2008. 8. 21.
- 다. 상 정 일 자 : 2008. 8. 28.(제15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기석 의원)

가. 제안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제천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영의 위탁(안 제5조)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 ※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을 준용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함.

○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안 제6조, 안 제7조)

-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적격성,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공개모집을 원칙

○ 수탁자의 선정 심사위원회(안 제8조)

- 위원회 구성 : 9인이내(위원장 : 부시장)
-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고용승계(안 제9조)

-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함.

○ 위탁기간(안 제10조)

- 위탁기간 : 3년~5년

○ 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안 제11조)

- 위탁업무평가 :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재위탁 가능.

○ 위탁계약(안 제12조)

- 위탁계약 체결 내용
 - 가.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나. 위탁계약기간
 - 다.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라.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마.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바.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운영 지원(안 제13조)

-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도·감독·감사(안 제15조)

-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을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위탁기관은 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법적 검토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제5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6항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 본 조례안은 박기석의원님의 6인의 명의로 발의되어 집행부 관계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행정적 검토 】

- 본 조례안은 재천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의 경우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이 조례안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다른 시설은 해당 시설의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됨.
- 조례안 제6조, 제7조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1항의 내용을 따른 것이며 별표 1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의 기준과 배점에 대해서는 심의가 필요함.
- 조례안 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 제2항, 제3항의 내용을 따른 것임.
-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2조(위탁기간, 위탁계약)의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항의 내용을 따른 것임.
- 조례안 제11조(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의 내용중 별표 3 평가의 기준과 배점에 대해서도 심의가 필요함.

- 본 조례안과 관련한 관계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 조례안 제4조제4호 영유아보육시설의 내용을 기존 조례 중복으로 삭제할 요망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 수탁자심사위원회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추가할 요망하였음.
 - 조례안 제10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을 5년 이내로 수정요망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 재위탁의 경우 공개경쟁과 평가결과 70점이상 판정된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수정요망하였음.
- 관계팀의 의견과 관련하여
 - 조례안 제4조4호의 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적용범위)에서 이미 중복을 배제하였기에 삭제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10조의 내용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한 의견은 수탁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의 추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1조와 관련한 의견은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를” “70점이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하여 “매우 우수”라는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없애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 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하여 수탁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10조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조례안 제11조와 관련하여 평가결과 85점이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하여 “매우 우수”라는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7. 심 사 내 용

- 양순경의원의 수정안 발의(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으로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심사보고 붙임서류

1.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끝.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8조제3항5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신설한다.
- 안 제8조제7항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과(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한다”를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주무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로 한다.
- 안 제10조 “3년에서 5년으로”를 “3년으로”로 한다.
- 안 제11조제1항 “재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함으로써 재위탁할 수 있다.”를 “재위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가 85점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①(생략)</p> <p>② (생략)</p> <p>③ ----- <u>위촉하되</u> -----.</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5. <u>(신설)</u></p> <p>④ (생략)</p> <p>⑤ (생략)</p> <p>⑥ (생략)</p> <p>⑦ ----- <u>간사는 사회복지업무담당 과(팀)장을 하며, 서기는 주무담당으로 한다.</u></p>	<p>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①(현행과 같음)</p> <p>②(생략)</p> <p>③ ----- <u>임명 또는 위촉하되</u> -----.</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u>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 <u>간사는 사회복지업무 주무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u></p>
<p>제10조(위탁기간) -----</p> <p><u>3년에서 5년으로</u> -----</p>	<p>제10조(위탁기간) -----</p> <p><u>3년으로</u> -----</p>
<p>제11조(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①</p> <p>----- <u>재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가가 매우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함으로써 재위탁할 수 있다.</u></p>	<p>제11조(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①</p> <p>----- <u>재위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가 85점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u></p>